

##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제정	2006. 10. 1	규정 제 4호
개정	2007. 11. 20	규정 제 26호
개정	2008. 4. 8	규정 제 29호
개정	2009. 1. 23	규정 제 34호
개정	2009. 6. 17	규정 제 43호
개정	2010. 2. 23	규정 제 60호
일부개정	2011. 10. 24	규정 제 77호
일부개정	2011. 12. 28	규정 제 80호
일부개정	2012. 1. 30	규정 제 84호
일부개정	2012. 4. 12	규정 제 85호
일부개정	2012. 5. 29	규정 제 88호
일부개정	2014. 2. 17	규정 제107호
일부개정	2014. 4. 7	규정 제109호
일부개정	2014. 10. 31	규정 제112호
일부개정	2015. 12. 30	규정 제128호
일부개정	2016. 9. 12	규정 제135호
일부개정	2016. 12. 27	규정 제144호
일부개정	2017. 6. 29	규정 제153호
일부개정	2017. 8. 22	규정 제158호
일부개정	2017. 12. 21	규정 제160호
일부개정	2018. 10. 11	규정 제171호
일부개정	2018. 10. 11	규정 제174호
일부개정	2019. 4. 16	규정 제177호
일부개정	2019. 6. 21	규정 제192호
일부개정	2021. 7. 12	규정 제212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직제에 관하여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제의 개편)** 공단의 기구설치 및 직제의 개폐는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4. 16>

## 제2장 구성원

**제4조(구성원)** 공단의 구성원으로 이사장, 이사 및 감사, 직원을 둔다.

**제5조(이사장)**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을 책임진다.

**제6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인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임원의 구성은 정관에 의한다. <개정 2014. 10. 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시의 공단관리 부서장을 당연직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④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에 의한다.

**제7조(직무대행)**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다만, 이 경우 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제8조(직원)** 직원은 일반직으로 하며, 직급은 3급 내지 8급으로 한다. <개정 2019. 4. 16>

[전문개정 2017. 6. 29]

**제9조(자문위원)** 이사장은 정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자문위원을 비상근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3장 조직

**제10조(기구)** ① 공단에 혁신감사팀, 기획관리부, 체육사업부를 두고, 기획관리부에는 경영지원팀, 전략기획팀, 환경관리팀, 문화관광팀, 교통관리팀을 체육사업부에는 안전시설팀, 체육시설1팀, 체육시설2팀, 체육시설3팀을 둔다. <개정 2008. 4. 8, 2009. 1. 23, 2010. 2. 23, 2012. 5. 29, 2014. 4. 7, 2017. 6. 29, 2019. 4. 16, 2021. 7. 12>

② 공단의 기구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8. 4. 8, 2009. 1. 23, 2010. 2. 23>

**제11조(정원)** ① 공단의 정원은[별표 2]와 같이 하고, 부서별 정원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4. 8, 2009. 1. 23, 2009. 6. 17, 2010. 2. 23, 2017. 6. 29>

②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라 신규 채용된 인원은 별도 정원으로 관리한다.  
<신설 2015. 12. 30>

**제12조(직위)** ① 기획관리부장, 체육사업부장은 3급으로 보하고, 혁신감사팀장, 경영지원팀장, 전략기획팀장, 환경관리팀장, 문화관광팀장, 교통관리팀장, 안전시설팀장, 체육시설1팀장, 체육시설2팀장, 체육시설3팀장은 4급으로 보하고, 일반직은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순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0, 2008. 4. 8, 2009. 1. 23, 2010. 2. 23, 2011. 10. 24, 2012. 5. 29, 2014. 4. 7, 2017. 6. 29, 2019. 4. 16, 2021. 7. 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은 별도 내규로 정한다.

## 제4장 사무분장

**제13조(사무분장)** 공단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14조** 삭제 <2019. 4. 16>

**제15조** 삭제 <2019. 4. 16>

**제16조** 삭제 <2019. 4. 16>

**제16조의2** 삭제 <2019. 4. 16>

**제17조** 삭제 <2010. 2. 23>

**제18조** 삭제 <2010. 2. 23>

## 제5장 보칙

**제19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0조(권한과 책임)** ① 모든 임·직원은 분장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직무 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정 제26호, 2007. 11.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9호, 2008. 4.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4호, 2009. 1.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43호, 2009. 6.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60호, 2010. 2.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77호, 2011. 10.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전 계약직은 계약종료 시까지 정원으로 본다.

부칙 <규정 제80호, 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15조 제5호와 제6호 중 ‘버스승강장 청소’와 관련

된 내용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84호, 2012. 1. 30>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85호, 2012. 4. 12>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88호, 2012. 5. 29>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07호, 2014. 2. 17>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09호, 2014. 4. 7>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12호, 2014. 10. 31>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28호, 2015. 12. 30>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35호, 2016. 9. 12>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44호, 2016. 12. 27>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53호, 2017.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58호, 2017. 8.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60호, 2017.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71호, 2018. 10.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74호, 2018.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77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92호, 2019.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12호, 2021.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팀장”을 “전략기획팀장”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기획감사팀장”을 “전략기획팀장”으로 하며 제14조 중 “기획감사팀”을 “전략기획팀”으로 한다.

② 양주시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3인”을 “5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영관리부장, 경영지원팀장”을 “기획관리부장, 체육사업부장, 경영지원팀장 및 이사장이 지정하는 부서장 1인”으로 한다.

③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중 “경영관리부장”을 “기획관리부장”으로 한다.

④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성과평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성과급”을 “평가급”으로 하고,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팀장”을 “전략기획팀장”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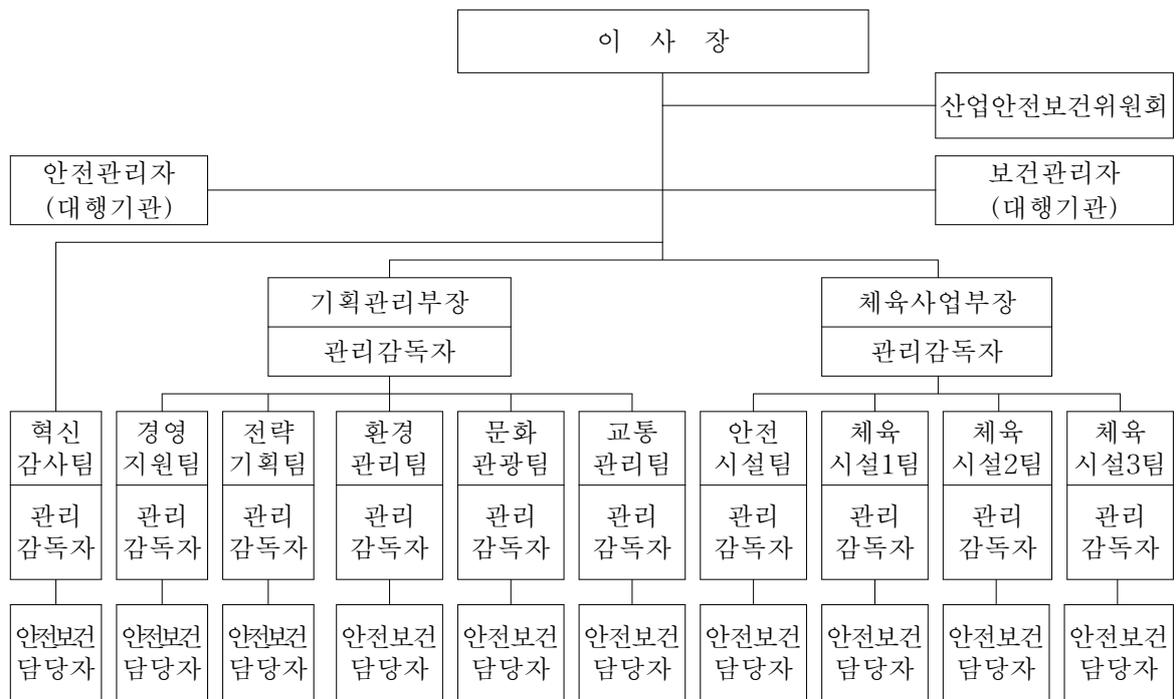
⑤ 양주시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총무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획총무팀”을 “경영지원팀”으로 한다.

⑥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중 “경영관리부장”을 “기획관리부장”으로 하고 [별표3]중 “기획감사팀”을 “혁신감사팀”으로 하며, [별표6]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서명	부서기호	수신처 기호	비 고
혁신감사팀	혁신감사팀	1	
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	2	
전략기획팀	전략기획팀	3	
환경관리팀	환경관리팀	4	
문화관광팀	문화관광팀	5	
교통관리팀	교통관리팀	6	
안전시설팀	안전시설팀	7	
체육시설1팀	체육시설1팀	8	
체육시설2팀	체육시설2팀	9	
체육시설3팀	체육시설3팀	10	

⑦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4조제4항제2호를 “기획관리부장”으로, 같은 항 제3호를 “체육사업부장”으로 하고,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영관리부장”을 “기획관리부장”으로 하고 “직제규정에서 정하

는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팀장, 경영지원팀장”을 “혁신감사팀장, 전략기획팀장”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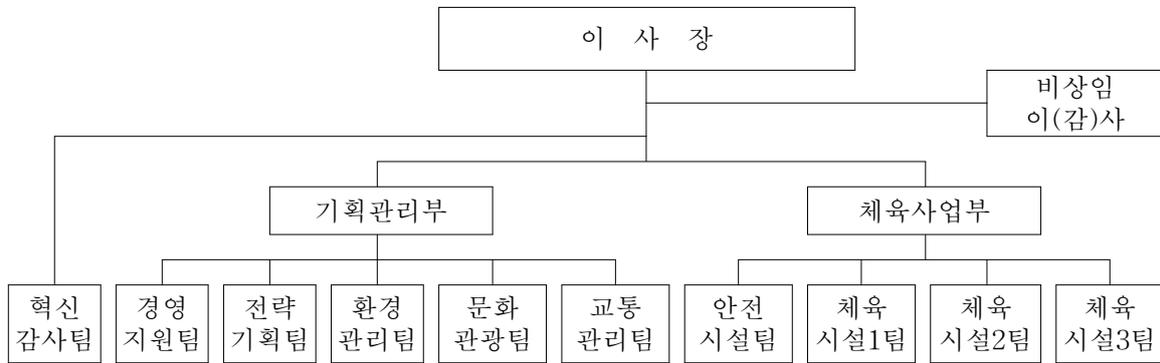
⑨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제안제도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획총무팀장”을 “전략기획팀장”으로 한다.

⑩ 양주시시설관리공단 보안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총무팀”을 “경영지원팀”으로 하고, 제14조 중 “기획총무팀장”을 “전략기획팀장”으로 하며, 제16조제1항 중 “기획총무팀장”을 “전략기획팀장”으로 한다.

⑪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직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총무팀”을 “경영지원팀”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기획총무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하며, 제9조제1항 중 “기획총무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제14조제4항 중 “기획총무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17. 6. 29, 2019. 4. 16, 2021. 7. 12>

기 구 표(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 2009. 1. 23, 2009. 6. 17, 2010. 2. 23, 2011. 10. 24, 2011. 12. 28, 2012. 1. 30, 2012. 4. 12, 2012. 5. 29, 2014. 2. 17, 2014. 4. 7, 2014. 10. 31, 2015. 12. 30, 2016. 9. 12, 2016. 12. 27, 2017. 6. 29, 2017. 8. 22, 2017. 12. 21, 2018. 10. 11, 2018. 11. 21, 2019. 4. 16, 2019. 6. 21, 2021. 7. 12>

정 원 표(제11조제1항 관련)

총계	임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240명	1명	2명	10명	15명	19명	41명	152명

[별표 3] 삭제 <2017. 6. 29>

